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 審 查 報 告 書

2001. 8. 27  
총무위원회

##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2001. 6. 22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1. 6. 23
- 라. 上程日字 : 2001. 8. 27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文化公報擔當官 : 曹富煥)

### 가. 提案理由

- 2000. 10. 23 “건축법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등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 나. 主要骨子

-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을 상위법과 연계시켜 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안 제3조)
- 건축주에게 건축 허가신청전 또는 허가신청시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안 제4조)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 확인(안 제5조)
-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작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지방세무서장에게 통보(안 6조).
-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을 둠(안 8조)
- 미술장식심의 위원회 구성·임기·직무·회의개최 등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건축면적이상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문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거나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2000.1.12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1조가 신설 또는 전문 개정되었고,

이어서 2000.10.2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4조의3이 신설 및 전문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문화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과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 그리고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과 평가를 위하여 해당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되었음.

- 본 제정조례안은 본문 1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각 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규제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으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였음,

또한 건축주가 미술장식품의 설치 절차등을 규정하였으며,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음

- 그러면 본 조례안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조례안 본문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중 제5호, 제7호의 해당 용도구분을 상위법과 같은 제한범위로 좀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5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중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3 제2항이 정하는 위원회 심의 사항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3항중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로 정하였으나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한함이 타당하며 본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간사의 발언권을 부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본 조항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안 제16조(운영세칙)은 같은 법 시행령제24조의3 제4항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본 조례에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규칙이나 운영세칙을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본 조례안과 같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운영세칙에 위원회 운영사항을 위임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근거법 개정과 더불어 이에 맞게 제정이 시급하나 위 조항중 일부만 수정·보완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별첨 본 제정조례안 검토조서는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본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보고 드리겠음.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수정가결

#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 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2조제5호 “판매시설“를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로 하고 제7호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으로 한다.
- 제5조중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의 확인을 받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로 한다.
- 제13조제3항의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로 한다.
- 제16조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내용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 조례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1~4(생략) 5. 판매시설 6. (생략) 7. 문화 및 집회시설</p> <p>제5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p> <p>제13조(간사 및 서기) ①~② (생략) ② -----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p>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p>	<p>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1~4(생략) 5.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6. (생략) 7.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p> <p>제5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3조(간사 및 서기) ①~② (생략) ② -----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p>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의안번호	제 216 호
의결년월일	2001. (제 회)

#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제출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1년 6월 22일

#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6 호
----------	---------

제출년월일 : 2001년 6월 22 일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제정이유

- 2000. 10. 23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문화예술공간이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을 상위법과 연계시켜 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함(안 제3조).
- 다. 건축주에게 건축 허가신청전 또는 허가신청시 미술장식품설치 계획심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보(안 제4조).
- 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 확인(안 제5조).
- 마.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

서상의 금액으로 하며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지방세무서장에게  
통보(안 제6조).

바.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7조).

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  
인 이내의 위원을 둠(안 제8조).

아. 미술장식심의 위원회의 구성·임기·직무·회의개최 등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 2, 제24조의 3

나. 입법예고 : 2001. 4. 9 ~ 4. 30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11조(이하 “법”이라 한다)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 2 및 제24조의 3(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 2 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
2. 의료시설중 병원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
7. 문화 및 집회시설

제3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 제24조제 1 항제 1 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2. 영 제24조제 2 호 내지 제 9 호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제4조(미술장식품의 설치 절차 등) ①영 제2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허가신청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산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15일 이내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시장은 제4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위원회에서 지명한 위원의 확인을 받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 1 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할지방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의 3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 및 건축과장이 되며 그밖에 의원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잔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개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관계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당해 분야의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건 축 개 요	위 치					
	건 축 주	성명 :		주소 :		
	지 역 · 지 구					
	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층 수		최 고 높 이		구 조	
	용 도		외 장 재 료		건 축 종 별	
	허 가 일 자		사 용 검 사 예 정 일		총 공 사 비	
건 축 설 계 자	주 소					
	사 무 소 명		성 명		전 화	
미 술 품 개 요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 품 가 액	
	전 화 번 호		재 료 ( 색 상 )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 품 가 액	
	전 화 번 호		재 료 ( 색 상 )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 품 가 액	
	전 화 번 호		재 료 ( 색 상 )		규 격	
	총 설 치 수	조 각 점		회 화 점	기 타 점	계 점
총 가 액			설 치 예 정 일			
<p>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첨부서류 : 1.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2. 작가 경력서 사본 1부.                  3.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도면 1부</p>						

※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품설치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당해 부문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 미술장식품 가격 통지서

제 호

관할지방세무서장 귀하

서 산 시 장 (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 축 개 요	위 치					
	건 축 주	성명 :		주소 :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층 수		최 고 높 이		구 조	
	용 도		외 장 재 료		건축종별	
	허가일자		사용검사에정일		총공사비	
건 축 설 계 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전 화	
미 술 품 개 요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 료 (색 상)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 료 (색 상)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 료 (색 상)		규 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계 점				
종 가 액				설치예정일		

# 관계법령 발취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권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물에 대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2)

## 제11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0. 1. 1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문화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9조제 2 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24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의 별표1의2와 같다.[본조 전문개정 2000.10.23]

(별표1의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24조 제 5 항관련)

1. 제24조제 1 항제 1 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4조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9 호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 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 (2) ~

## 제24조의 2(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소재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0.23]

## 제24조의 3(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10. 23]

제25조(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